

11. 롤스의 정의론과 죄형 법정주의 (수능 특강 p.272)

단락 분석

(가) (1단락)

①롤스는 공공 규칙의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 적용될 경우 법의 지배가 달성된다고 언급하였다. ②그에 따르면, 법률 제도는 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주기 위한 공공 규칙이다. ③그는 법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 규범으로 바라보고, 자유를 법률 제도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들의 복합체로 보았다. ④만일 법 조항이 애매하고 불명확하거나, 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이번에도 해설 읽기 전에 꼭 먼저 혼자 읽고 생각한 후 내 생각과 해설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읽자! 생운 공부하는 친구들은 롤스가 매우 친숙하지? **롤스는 공공 규칙이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법의 지배가 달성**된다고 언급했다.
- ② **법률 제도도**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공공 규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 ③ 롤스는 법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 규범**으로 여겼고, **자유**를 법률 제도라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권리, 의무들의 복합체**라고 보았다. 아니, 자유가 그냥 자유로운 거지 왜 자유를 또 어렵게 설명하는 거냐고...자꾸 추상적인 얘기를 이어 나가고 있어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직은 파악하기 어려울 거야.
- ④ '~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③문장을 **부연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왜 이 문장이 ③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건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흐음, 최대한 자세히 풀어서 단락을 분석해볼게! 일단 문장을 'A거나 B인 경우, 개인의 자유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의 구조로 파악하자. 여기서 드는 의문이 2가지가 생겨야 해.

- 1) **개인의 자유가 불명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 2) **왜 A** 혹은 B인 경우 자유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지? ①②③문장으로 추론할 수 있나?

힌트는 ①②③문장에서 어느 정도 제시되었어. 하나씩 해결해보자.

먼저 ③문장을 보면 **자유를 법률 제도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들의 복합체**라고 제시했잖아.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개인의 권리와 의무들이 모여 자유를 이룬다고 이해할 수 있어. 그렇다면 자유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은 개인들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주어진 의무가 법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된다는 뜻이야. ③문장에서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규범이라고 했으니, 바꿔서 해석하면 **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제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어. 또한 ②문장에서 **법은 공공 규칙**이며, ①문장에서 **공공 규칙이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용**되어야 법의 지배가 달성된다고 했어. 종합하면 **법이라는 공공 규칙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과정이 공평하고 일관되어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즉 자유가 명확하게 보장되고, 그 상태를 법의 지배(법치)가 달성되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이해,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습할 때 자꾸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수능에서도 번뜩하면서 글이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이번엔 더 쉽게 이해해보자. 평상시 우리가 마음대로 집을 이사할 수 있는 자유, 남에게 진 빚을 갚아도 되지 않는 자유, 화가 나면 남을 때려도 되는 자유 등등...이런 자유를 어디서 보장받고 혹은 제한받는 거지? 힘이 세면 모든 자유를 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이 많으면? 아니지, 우리는 법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우리 마음껏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없고, 법으로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법 조항이 뭔가 애매모호하고, 그때 그때 다르게 적용되고,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법으로 보장되는 개인들의 자유가 그때 그때 달라지니까(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벌 받고) 불명확해지고, 그럼 사람들이 법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될테니 법의 지배(법치)도 불가능할거야. 알고보니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결국, 1단락에서는 **법치(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 조항이 분명해야하고, 법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져야한다**고 말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법 조항이 분명해지는 건지, 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 이제부터 설명해 줄 것 같아.

(2단락)

①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다. ②그중 하나는 유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법은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내포할 수 없는 반면,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한다. ④사건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법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결이 달라진다. ⑤특히 법이 어떤 사건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그것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⑥하지만 법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법률의 의미나 취지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⑦롤스는 유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결 가능성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 ① 바로 전 문장에서 말한 **법의 기본 원칙**들을 이어서 설명할 건가봐. 1단락을 뜯어 먹었으니 이제 제법 쉬울 거야.
- ② **제1원칙. 유사한 경우, 유사하게 취급!**
- ③ 법이 모든 사건 및 소송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어.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메타버스가 생기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범죄가 생기는 것처럼)
- ④ 그래서 결국 법관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법 조항을 해석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 ⑤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해 규정이 정확하게 없을 경우(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내 범죄) 법관은 그 사건과 가장 비슷한 경우를 다루는 법률을 적용한다.
- ⑥ 그런데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적용한 법률의 의미도 법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과는 항상 체크) 해석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 결국 유사한 경우의 법률을 적용해도 **해석이 다르면 판결이 다르다**는 거지.
- ⑦ 그래서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 해당 법률을 적용할 경우 해석도 최대한 유사하게 하라는 원칙을 제시한 거였어. 쉽게 말해 판사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지 말라는 원칙!

이 제1원칙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1단락 ①문장을 다시 보면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 적용되어야 법의 지배(법치)가 가능하다고 했지? 제1원칙이 바로 법을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어!

(3단락)

①롤스가 제시한 또 다른 원칙 중 하나는 법이 없다면 처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②이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아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또한 롤스는 법이란 분명히 공포해서 알려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④즉,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는 최소한 인지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음을 공공연하게 알려야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 ① 이번엔 **제2원칙. NO 법, NO 처벌.**
- ②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니, 항상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③ 더 나아가 법을 만들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몰래 만들지 말라는 거지.
- ④ ③문장과 같은 의미. 이제 글이 쉽지?
제2원칙은 1단락 ④문장에 **법 조항이 애매하고 불명확하면 자유가 불명확해진다**라는 문장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분명하게 알려야 하는 거니까!

(4단락)

①한편 롤스는 “법이 적용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간단하게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밝히고 있다. ②이 원칙은 피고인에게 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법의 소급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③이 원칙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피고인에게 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제3원칙. 불리한 소급 효력은 NO.** 아, 그런데 소급 효력(=소급효)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네...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문제에서 힌트로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지 자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어. 법지문이 이래서 괴로워. **소급효**는 법률 또는 법률 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돼.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은 벌금 100원 형에 처한다.'는 법을 새로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즐았던 학생에게 새 법을 적용해 100원을 내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 ② 피고인(소송 당한 사람, 고소 당한 사람, 형사 재판 받는 범죄자)이 **불리하게 소급효를 인정하면 안된대**. 만약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전에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는데(제2원칙), 이후 새로 법을 만든 거야. 그래도 그 범죄자를 새로

[Legal Mind] EBS analysis

만든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지.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그 정도로 소급효를 인정하면 다른 모든 사건에도 소급효를 인정해야 공평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모든 사건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자칫 잘못될 경우 나라가 일부러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일부러 벌주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할 것 같아.

- ③ 반대의 경우(소급효 인정)를 제시하고 있어. **반대의 경우**는 선지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더라. 체크하자!
4단락에서 제시한 제3원칙도 결국 **일관되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제 (가)지문은 끝!

(나) (1단락)

①형법은 국가 형벌권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②하지만 국가 형벌권은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③이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죄형 법정주의이다. ④죄형 법정 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때의 법은 성문으로 규정된 법만을 의미한다. ⑤이 원칙은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에서 최고 원리로 여겨지고 있는, 오늘날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⑥죄형 법정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원칙으로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성문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 ① 이제 (나)지문이야. (가)지문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신경쓰면서 읽어보자! **형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법에도 종류가 많은 거 알고 있지? 그 중에 형법을 꼭 집어서 설명을 해줄 건가봐. 이제 설명할 내용은 **형법에만 적용되는 내용**임을 유념하자! 최근 평가원 법지문 중 22학년도 6평 베카리아의 형벌론 지문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이해가 좀 더 쉽겠지? 여튼 형법은 최후의 수단!
- ② 국가 형벌권(범죄인에게 벌주는 권리)은 남용되면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대.
- ③ 따라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죄형 법정 주의**래!
- ④ 죄형 법정 주의가 뭔지 잘 모를테니 더 설명해주고 있어.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대. 오! (가)지문에서 제시한 법의 기본 원칙 중 제2원칙(NO법 NO처벌)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이때 법은 **성문법만** 의미한대...성문법은 3단락에서 다시 나오니 그때 설명해줄게.
- ⑤ 죄형 법정 주의 원칙이 형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래.
- ⑥ 죄형 법정 주의 원칙 내에서도 세부 원칙이 있나봐. **대표적인 3가지 원칙**을 이제부터 소개할 것 같아.

(2단락)

①유추 해석 금지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법규의 문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리 해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추상적이고 간결한 용어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건을 규율해야 하는 형법의 속성상 문리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③법관은 이러한 법의 흠결을 인식하기 때문에 법규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해서 법규를 해석하는 논리 해석을 해야할 때가 있다. ④대표적인 방법으로, 해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확장 해석과 해석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유추 해석이 있다. ⑤확장 해석은 해석의 결과가 법규에 제시된 문언의 의미보다 그 개념이 넓어진 해석이다. ⑥유추 해석은 어떤 사건에 적용할 법규가 없을 경우 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하는 해석이다. ⑦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하는데, 유추 해석은 금지하고 있다. ⑧왜냐하면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국민이 예상치 못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고, 형법이 보장해야 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⑨따라서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경계를 구별해서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⑩이 경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문언에 대한 해석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의미와 범위'인지와, 그 의미와 범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⑪이를 통해 문언의 해석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확장 해석이 아니라 유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 ① 제1원칙, **유추 해석 금지**를 먼저 설명할 건가봐. **형법 해석 방법**부터 알려주려 하고 있어.
- ② 법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하는 **문리 해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지문 2단락 ③문장에서 말했다시피 **법에 비해 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문리 해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 ③ 법관은 이러한 **법의 흠결**,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에 법규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해서 법규를 해석하는 **논리 해석**을 할 때가 있대. 문리 해석과 논리 해석으로 나뉘는 것 확인했지?
- ④ 논리 해석을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으로 또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 차이점은 **해석의 기준**. 확장 해석은 해석 **결과**, 유추 해석은 해석 **방법**이네. 제1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이니 앞으로 왜 유추 해석은 하면 안되는지 말해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 어렵지 않지?
- ⑤ 확장 해석을 정의해주고 있어. 해석 **결과**가 법규에 쓰여진 내용의 의미보다 넓어진 해석이래. 설명이 확 와닿지는 않을수도 있지만 앞으로 유추 해석 금지에 대해 설명을 할테니 당장 예시나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어.

[Legal Mind] EBS analysis

- ⑥ 이어서 바로 **유추 해석**을 정의하고 있어. 이제부터 더 집중! 유추 해석은 적용할 만한 법규가 없는 사건의 경우 가장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해석 방법**)하는 해석이래. 오! 감이 오지? (가)지문 2단락에서 제시한 제1원칙(유사한 경우, 유사하게 취급)과 연결되는 내용이네. 하지만...
- ⑦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을 금지!** 아까는 유사한 경우를 적용하고 유사하게 취급하러더니. 왜 이번엔 유사한 경우를 적용하지 말라는 걸까?
- ⑧ '**왜냐하면**' (인과) 유추 해석을 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형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대. 흠음, 아까 (가)지문 제2원칙(NO법NO처벌)을 보면 **법을 만들면 꼭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지?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이 미리 알아야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같은 맥락으로 **국민이 미리 대비할 수 없는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 ⑨ 그래서 어떤 경우가 확장 해석이고, 유추 해석인지 구별해야 한대. 확장 해석은 가능하다는 얘기. 문리 해석만으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 ⑩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 ⑪ 피고에게 불리하면 안된다는 것은 대강 이해하겠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의미와 범위**' 인지를 판단해야 한대. 뭐가 가능한지 말을 안해줬어. 말해줘야 정상인데 일부터 말 안해준거야. 문제에서 추론시키려고.(열받아.. 설명문은 쉬워야 좋은 설명문인데!) ⑧문장과 연결지어 추론해보자. 유추 해석을 하면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했었어.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의미와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면 뜻은 **국민이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해석**을 해야 유추 해석이 아닌 확장 해석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어.

(3단락)

①성문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이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해 성문으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행위를 범죄로 간주할 수 없고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성문주의에 의하면, 성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관습법의 경우 사회 구성원이 그 내용을 알기 힘들거나 사람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① 제2원칙. **성문주의**. 범죄와 형벌을 반드시 성문으로 규정해야 한대. 1단락 ④문장에서도 얘기했었지? 성문으로 규정된 법을 성문법이라고해. 이 문장은 **성문법으로만 근거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거야.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어. 먼저 성문법은 의회나 기타 법률의 제정 주체(행정 기관 등)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법으로 정해져서 문장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제정법이라고도 해. 성문법에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속해. 불문법은 형식적으로 **법전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생활에 법적효력으로써 규율하는 법형태를 말해.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자연의 이치, 사회 통념 등) 등이 있어.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판사가 판결할 때 성문법이 가장 중요한 판결 근거로 작동되지만,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의 경우(민법 등)에는 판례 등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 ② 성문주의는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원칙인 거야.
- ③ 관습법의 경우 사회 구성원이 그 내용을 알기 힘들거나 사람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과..!)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 관습은 보통 지역, 세대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지.

(4단락)

①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하고 행위 후 제정된 사후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소급효를 금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형법 법규가 갖는 의사결정 기능이나 행위 결정 기능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③하지만 어떤 범죄 행위가 행위 이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제3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가)지문 4단락에서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제3원칙**과 같은 내용이네?
- ②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형법 법규가 갖는 기능이 무의미 해진대. 앞서 무죄라고 내린 결정을 추후에 소급효로 유죄로 처벌하면 결국 결정 기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는 거겠지? 비슷한 내용을 Legal Mind 1주차 **기판력** 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다들 풀었지?(심지어 평가원 기출이니깐..!)
- ③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는 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대. 기존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사후(사건 이후) 법률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 기존에 내린 형(처벌)이 사후 법률에서 더 가볍게 변경되었을 때는 바뀐 법률로 다시 적용한대. 오! (가)지문 4단락 ③문장에서 **피고인에 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었어! 소급효 금지의 반대 경우이니 체크해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 이제 끝! 고생했어~